14. 建設交通部 民資留置業務 處理要領全文改正

建設交通部告示 第1996－391號 1996. 12. 13

건설교통부 민자유치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전문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과 동법시행령(이하 각각 "법과 영"이라 한다) 및 민자유치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중 건설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자유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교통관련시설"이라함은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중 건설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공항시설, 다목적댐, 하천부속물,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및 도시공원 시설을 말한다.
2. "주무부서의 장"이라 함은 해당 건설교통관련시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국장(신국제공항건설기획단장 및 고속철도건설지원단장을 포함한다) 및 철도청의 담당국장을 말한다.
3. "예비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의 지정을 위하여 제4조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제13조 제7항에 따라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사업시행자로의 지정을 위하여 제4조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제12조 제7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건설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업무에 관하여는 법·영 및 민자유치기본계획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제4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건설교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지시에 관한 사항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협상계획의 수립 및 협상지시에 관한 사항
5. 예비사업시행자 결정 또는 재협상 의뢰, 예비사업시행자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 결정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교통부 민자유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장·수송정책실장, 국토개발연구원장, 교통개발연구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과 위촉위원으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과 전문위원으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건설교통관련시설별로 5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위촉위원과 전문위원중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촉위원과 전문위원중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에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교통부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서면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전문위원은 당해 건설교통관련시설에 대한 안건이 심의되는 회의에만 참석한다.

⑥주무부서의 장은 당해 건설교통관련시설에 대한 안건이 심의되는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⑦주무부서의 장은 당해 건설교통관련시설에 대한 안건이 심의되는 회의의 회의록을 기록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제출된 회의록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은 어떤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 특정 위원의 심의참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당해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⑨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⑩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⑪이 요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평가단 또는 협상단) ①위원회는 제12조 제3항 또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시하는 평가 또는 협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별로 당해 민자유치사업과 관련있는 전문가로 평가단 또는 협상단을 구성·운영한다. 단, 건설교통부내 당해 민자유치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은 협상단의 단원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②평가단 또는 협상단은 국토개발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에 설치한다.

③평가단 또는 협상단의 책임자(이하 "평가단장 또는 협상단장"이라 한다)는 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과 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이 된다.

④국토개발연구원에 설치하는 평가단 또는 협상단은 건설교통관련시설중 도로 및 도로부속물, 다목적댐, 하천부속물, 도시공원의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교통개발연구원에 설치하는 평가단 또는 협상단은 기타의 건설교통관련시설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을 수행한다.

⑤평가단장 또는 협상단장은 평가단 또는 협상단을 구성·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단 또는 협상단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선정에 관한 사항
2. 평가단 또는 협상단의 활동에 있어 대외보안에 관한 사항
3. 평가단 또는 협상단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가단 또는 협상단의 활동 과정 및 결과에 관한 보고서(평가결과보고서 또는 협상결과보고서) 및 위원회 심의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5. 평가단 또는 협상단에서 개최하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 작성등 평가단 또는 협상단의 활동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평가단 또는 협상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장 민자유치기본계획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민자유치 기본계획의 수립) ①주무부서의 장은 법 제4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민자유치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송정책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송정책실장은 주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건설교통부문 민자유치기본

계획안을 마련, 매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민자유치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통보) 주무부서의 장은 민자유치대상사업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분기별로 수송정책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주무부서의 장은 민자유치대상사업별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금융기관의 소속직원, 공인회계사·변호사등 전문가 등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내 민자유치관련 전·현직 과장으로 구성되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할 수 있다.

④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책적·전략적 사항을 조정·검토를 위해 "건설교통부 1급 정책회의"에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상정할 수 있다.

⑤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해 관련부처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해 공청회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⑦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간사에게 회의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⑨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변호사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예비사업시행자의 결정

제11조(사업계획서 접수 및 최소충족요건 검토) ①주무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이 관련법규 및 시설사업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이하 "최소충족요건"이라 한다)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최소충족요건 검토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변호사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검토결과 사업계획서가 최소충족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간사에게 회의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검토결과 사업계획서가 최소충족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사업계획

서를 반려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접수현황 및 최초 충족요건 검토결과 등을 위원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주무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뢰 및 보고를 받은 후 제7조 제4항의 업무소관에 따라 평가단장에게 사업계획서 평가일정·평가단원 인선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평가단장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을 심의한 후 제7조 제4항의 업무소관에 따라 평가단장에게 사업계획서 평가를 지시하여야 한다.

④사업계획서 평가를 지시받은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주무부서의 장은 평가단의 사업계획서 평가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평가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⑥평가단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과정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평가단의 사업계획서 평가과정 및 결과와 평가단원 등에 대해 심의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⑧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를 대외발표하고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예비사업시행자 결정) ①주무부서의 장은 예비사업시행자 결정을 위하여 간사에게 회의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예비사업시행자 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주무부서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의한 예비사업시행자 결정을 의뢰받은 후 제7조 제4항의 업무소관에 따라 협상단장에게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일정, 협상단원 및 협상전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협상단장이 작성한 협상계획을 심의한 후 제7조 제4항의 업무소관에 따라 협상단장에게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지시하여야 한다.

⑤협상을 지시받은 협상단장은 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계획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협상단장은 협상과정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협상단의 협상과정 및 결과 등을 심의한 후 예비사업시행자를 결정하거나, 재협상 의뢰 또는 예비사업시행자

결정불가능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 결정을 대외발표하고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영 및 민자유치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과정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필요예산확보 등

제14조(필요예산 확보) ①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등 민자유치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신문공고비용, 위촉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수당,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자문비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평가단원, 협상단원,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자 및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수당 또는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국토개발연구원 및 교통개발연구원은 평가단 또는 협상단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안건상정) 주무부서의 장, 평가단장 및 협상단장등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건 30부를 위원회 개최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서식 등) ①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신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⑤위원회 개최 통보등 위원회의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사업시행자 선정절차가 진행중인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급유시설·열병합발전소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및 대구~대동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은 개정전 요령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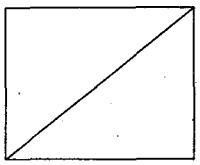

의안 번호	제 호
심 의 년 월 일	19 . . (제 회)

제 목 :

건설교통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제 출 자	
제출년월일	19 . .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①사 업 명	
②사 업 시 행 위 치	
③사 업 시 행 규 모	
④사업시행방법 및 기술적관련사항	
⑤사 업 시 행 기 간	
⑥공정별 공사시행계획	
⑦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⑧부대사업 수반시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⑨기 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 인 명
대 표 자 성 명 (인)
법인등기번호
법 인 주 소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위치도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된 용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 설계도서)
4.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
5.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계획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에 관한 서류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0.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심의필증(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1. 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2.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보고서

①사 업 명	
②공 사 의 종 류	
③사 업 시 행 위 치	
④사업시행규모	
⑤사 업 목 적	
⑥총 공 사 비	
⑦공사기간	착 공 . . . 준 공 . . .
⑧국가귀속 사업내용	
⑨기 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 확인을 받고자 공사준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 인 명
대 표 자 성 명 (인)
법인등기번호
법 인 주 소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준공도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별지 제4호 서식]

준 공 확 인 필 증

사업시행자 법 인 명
대 표 자 성 명
법인등기번호
주 소

귀하가 시행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 확인하고 본 증서를 교부합니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명(위치)
2. 공사의 종류
3. 공사 장소
4. 공사 목적
5. 공사기간(준공년월일)
6. 준공시설(국가귀속 여부)

년 월 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인)

[별지 제5호 서식]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 신고(변경신고)서

신고자	법 인 명		업 종	
	대표자성명		법인등기번호	
	법 인 주 소	(전화번호 :)		

신 고 내 용	
징수대상시설	
사 용 료 종 류	
사 용 요 율	
감면할증내용	
시 행 일 자	
징 수 기 간	
징 수 방 법	
사 용 방 법	
신 고 사 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주무관청) 귀하

〈구비서류〉

1. 사용료의 산출기초 자료
2. 사용료의 징수방법
3. 사용료의 감면 또는 할증대상 및 비율
4. 유사시설의 사용료 기준
5. 변경신고의 경우 사용료의 신·구 대비표

주택회보